

대전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가단1115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동

담당변호사 유재복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명

변론 종결2022. 10. 12.

판결 선고2022.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망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7. 12. 28.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 대전지방법원대덕등기소 접수

제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21. 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13. D조합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4. 8. 14. 망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망인은 원고가 부담하는 월 이자를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송금받은 돈으로 D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7. 12. 28.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8. 1. 2. 접수 제67호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린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2019. 3. 6.자 차용증서

망인은 A(원고임)으로부터 일금 일억 칠천만원을 은행 대출금리로 차용하였습니다. 이자는 매월 10일, 21일로 지급합니다. 또한 본인은 A씨에게 금전적 손해가 없도록 하며 2020. 12. 31.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 2020. 12. 31.자 차용증서

일억 오천사백만원을 2021. 1. 14.까지 이 금액에 대하여 채권 담보 및 공증을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피고 측의 2018. 7. 11.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7. 5.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다음 날 이를 망인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사실, 2018. 7. 11. 14:37경 망인의 위 E조합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7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는 2018. 7. 11.자로 '칠천만원을 영수합니다'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21. 2. 15.

전화통화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가 분명히 당신 그때 그랬지? 돈 주지 말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내가"라고 하자, 피고가 "그러신 건 맞아요"라고 인정하였고, 또한 피고는 계속된 원고와의 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 돈 하나도 없다고, 우리 돈 하나도 없으니까 주지 말라고. 내가 그때 부탁을 했잖아요. 댁에 돈 주면서. 그러면 알아들었어야죠. 이 상황이 어떻다는 거를, 우리 돈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돈 하나도 없으니까 주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그날 부탁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이후 망인의 원고에 대한 70,000,000원을 망인 대신 변제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원고의 망인에 대한 2014. 8. 14.자 70,000,000원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계좌로 70,000,000원이 송금된 당일 저녁 09:30경 망인이 원고에게 "이자를 제때에 갚을 것이니 변제받지 않은 것으로 하고 내일 돈을 인출하여 되돌려 달라"고 간청하여 2018. 7. 12. 13:19:49 F조합 G지점에서 액면금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7장으로 인출하여 망인에게 교부하였고, 망인으로부터 대출이자 상당액을 계속 송금받아 왔으므로, 2014. 8. 14.자 대여금이 2018. 7. 11.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대신에 피고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여 주면서 원고에게 다시는 망인에게 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점, 원고가 2018. 7. 11.자로 7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후인 2018. 7. 12. 망인에게 70,000,000원을 별도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성립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강길연

별지